

야적퇴비 방치 줄여 녹조 잡는다

-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관리시기 확대하고 시스템을 활용해 추적 관리
- 홍수기 시작 전까지 하천변 축사, 농경지 밀집지역 등에서 확인된 야적퇴비 모두 덮거나 수거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조 계절관리제*(5월 15일~10월 15일) 첫 시행과 연계하여 6월 중순까지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녹조 계절관리제) 여름철 빈발하는 녹조 발생요인의 근원적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실행계획('26.5.15~10.15)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야적퇴비 관리 시기를 2월부터 11월까지 확대(과거 3~9월)했으며, 이모작 농가를 고려하여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조 예방은 물론 지역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한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살펴본다.

점검 방식은 덮개설치 등 일차적으로 조치된 공유지 야적퇴비의 경우 퇴비의 소유주를 찾아서 수거 조치하도록 안내하며, 새롭게 발견한 퇴비는 덮개를 씌워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는 작업을 병행한다. 사유지 퇴비는 해당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덮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퇴비의 조사 지점 및 관리 실적을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상황을 추적 점검한다.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광범위한 지역의 야적퇴비 관리를 병행한다.

*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 지역 주민 등의 오염원 입력 등을 통해 각종 비점오염원을 파악하여 댐 수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4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담당자	주무관	이신영 (044-201-7077)



□ **추진 배경**

- '26년에는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야적퇴비 관리시기 확대와 더불어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5~6월, 9~10월에 특별점검 추진
 - * (녹조 계절관리제) 여름철 빈발하는 녹조 발생요인의 근원적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실행계획('26.5.15~10.15)
- 특히, 5~6월 점검은 '장마철 이전' 녹조 우심지역 및 퇴비 다발지역 대상 특별점검을 통해 녹조예방 및 경각심 고취 필요
 - * ('25) 2~3월 조사, 4~10월 관리, 5~6월 특별점검 ⇒ ('26) 2월~11월 조사 및 관리, 5~6월과 9~10월 특별점검(이모작 추세 고려)

□ **그간 추진경과**

- 유역(지방) 환경청 주관 야적퇴비 **현황조사(2월~)** 결과, 4월말 기준 야적퇴비 **1,497개 조사 및 관리**(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
- 공유지 내 야적퇴비는 우선 **덮개로 덮고, 수거를 명령하여** 수계유출 최소화, 사유지 내 부적정 야적퇴비는 덮개 보급 및 계도
-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퇴비정보 및 조치내용 등록, 퇴비의 추적관리 가능

□ **1차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25.5.11 ~ 6.15 ※ 유역(지방)청별 자체 계획하에 3~5회 실시
- (점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한국환경보전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합동
- (점검대상) 청별 조사(2~4월)에서 확인된 야적퇴비 추적관리, 공공수역 인접 축사 밀집지역, 농경지 밀집지역 등
- (점검내용)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된 퇴비 유무와 덮개의 설치상태 조사 및 필요시 덮개 설치 및 덮개 보강 조치 등